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사업실적 보고의무 강화 〉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716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사업실적 보고의무 강화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4
다. 검토의견	7
라. 관계 기관 의견	11

I. 개요

1. 전진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71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진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9.

(3) 회 부 일 : 2024. 12.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환자에게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사업실적 보고의무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할 때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2항 신설),

이를 허위로 보고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보고의무) ① (생략) <u><신설></u>	제11조(보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u>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u>사업실적</u> 을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u>사업실적</u> 등을-----

현행	개정안
3. (생략) ② · ③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개정·공포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이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본격적으로 허용되었고,¹⁾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라 한다)이 2015년 12월 제정·공포되어 2016년 6월부터 시행되었음.²⁾

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가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된 2009년 이후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COVID-19 팬데믹 시기 출·입국 제한에 따른 일시 급감을 제외하고 꾸준히 성장하였고, 연간 실환자 기준 2023년 실적치(605,768명)는 COVID-19 팬데믹 발발 이전인 2019년(497,464명)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음.

< 진료유형별 외국인환자(실환자^주) 현황 >

(단위: 명)

구 분	합 계	진 료 유 형	
		입 원	외 래
2009년	60,201	3,915	56,286
2010년	81,789	7,987	73,802
2011년	122,297	11,945	110,352
2012년	159,464	14,809	144,655
2013년	211,218	20,137	191,081
2014년	266,501	23,855	242,646
2015년	296,889	24,489	272,400
2016년	364,189	26,276	337,913
2017년	321,574	27,678	293,896
2018년	378,967	27,879	351,088
2019년	497,464	24,449	473,015
2020년	117,069	10,600	106,469
2021년	145,842	12,269	133,573
2022년	248,110	18,738	229,372
2023년	605,768	27,474	578,294

주: ‘실환자’란 의료기관 방문 실인원으로 중복내원 횟수를 제외한 환자 수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2024년 7월.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이나 사업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³⁾

2024년 2월 7일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각각 3,078개소와 1,913개소가 등록되어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외국인환자에게 인증된 정보와 이에 대한 접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Medical Korea’ 인터넷 홈페이지⁵⁾를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registered hospitals)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registered facilitators) 등록 현황이 공개·게재되어 있음.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0.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5) Medical Korea, <<https://www.medicalkorea.or.kr>>.

다. 검토의견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외국인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부상명 및 외래 방문일수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의무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⁶⁾

-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제2항⁷⁾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 종별로 적정 유치 수수료를 고시하고 있음.⁸⁾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고의무)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부상명 및 외래 방문일수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조(적정 유치 수수료율의 범위)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은 유치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간의 자율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할 수 있다.

1. 상급종합병원 : 15%

2. 종합병원·병원 : 20%

3. 의원 : 30%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도 함께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도지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 전반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불법 중개행위의 유무를 판단 하여 제재처분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불법 유치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우리 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 건수가 2019년 2건에서 2022년 28건과 2023년 54건으로 급증⁹⁾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¹⁰⁾

□ 참고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전략 수립 등을 목적으로 법정 외 항목으로서 ‘유치 유형’에 관하여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시 함께 보고하도록 하면서,¹¹⁾

유치유형이 ‘국내 유치사업자’ 또는 ‘해외 에이전시’인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부담한 유치수수료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대비 5건 증가함.

10) 「2023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부록)」, 2023년 10월 25일, 50면.

1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이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과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의무보고사항에 포함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보고사항에 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사업실적 보고사항 >

구 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법정 항목	○ 환자등록번호 및 출생연도 ○ 성별, 국적, 진료과목 ○ 외래 방문일수(진료일자·진료유형) ○ 입원기간(입·퇴원일자) ○ 주상병명(주진단 상병코드) ○ 진료비 및 유치수수료	○ 환자등록번호 및 출생연도 ○ 성별, 국적 ○ 방문 의료기관 ○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진료일자) ○ 진료과목 ○ 입국일 및 출국일
법정 외 항목	○ 중국·러시아·UAE 국가의 행정구역 ○ <u>유치유형(미군/글로벌보험/국비/국내 유치사업자/해외에이전시/기타계약)</u>	-

[참고 4] 유치실적보고 항목별 작성 가이드(의료기관)

1) ~ 8) (생략)

9) 유치유형: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적 기재

- 미군 또는 미군 가족은 '미군' 기재
- 글로벌보험 이용한 환자는 '글로벌보험' 기재
- 국가에서 지원받은 환자는 '국비' 기재
- 국내 유치사업자를 통한 유치는 '국내유치사업자' 기재
- 해외 에이전시를 통한 유치는 '해외에이전시' 기재
-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경우 '자발적내원' 기재
- 그 외 계약에 의해 진료받은 환자는 '기타계약' 기재

10) 유치수수료: 9) 유치유형에서 국내유치사업자 or 해외에이전시를 선택 시 지급한 유치 수수료를 4지 선다형 중 택 1 기재 (숫자 입력: 1, 2, 3, 4 중 택 1)

- 1. 15%이하, 2. 15초과~20%이하, 3. 20초과~30%이하, 4. 30%초과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 2024년 12월.

□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모두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해외 에이전시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임.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상호 배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4호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를 소개·알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²⁾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해외 에이전시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해외 에이전시의 소개·알선이 허용된다면, 개정안과 같이 전년도 사업실적 관련 의무 보고서

1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은 경우

항을 추가하더라도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에이전시의 난립 방지’와 ‘해외 에이전시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한편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전년도 사업실적’ 외에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를 시·도지사에게 별도로 보고하게 하여 보고사항을 이원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를 ‘전년도 사업실적’에 포함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인 제31조 제1항제2호는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의무보고사항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